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6명(4급 1명, 5급 3명, 6급 2명)은 감축하고, 5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)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대·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 1명(5급 1명)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2. ~ 9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후단 중 “44명”을 “43명”으로 한다.

제5장(제25조) 및 제6장(제26조)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91”을 “48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8”을 “482”로 하며,
3급 또는 4급 이하 “468”을 “462”로 한다.

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 략)	제22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<u>44명</u> 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<u>43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</u>	<u><삭 제></u>
<u>제25조(평가 대상 조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</u>	

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
정한다.

제6장 한시정원

<삭 제>

제26조(한시정원) 대·중소기업
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
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
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
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
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
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며, 별
표 5의 정원 1명(5급 1명)은 중
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
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
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
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
리 협의해야 한다.

<삭 제>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91</u>	<u>485</u>	-6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488</u>	<u>482</u>	-6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68</u>	<u>462</u>	-6
•	•	•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4